

국제예비심사는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둘 이상의 관할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선택해야 한다. 출원인은 아래에 해당기관의 전체 이름 또는 두 문자 코드를 적을 수 있다.

IPEA/ _____

PCT

제2장

국제예비심사청구서

특허협력조약 제31조에 따라 아래 서명자는 다음의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이 되기를 청구합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 전용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표시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접수일

제12011관 국제출원의 표시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일/ 월/ 년)	우선일 (최선일) (일/ 월/ 년)
발명의 명칭		

제2기재란 출원인	
성명(명칭) 및 주소 :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출원인코드

이메일 송부 동의: 아래 난 중 하나에 표시함으로써 국제사무국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이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발행한 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송부하고자 할 경우 이 난에 적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서면 통지서에 앞서 선람용 사본 송부; 또는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서면 통지서는 송부되지 아니한다)

이메일 주소:

국적 (국가명) :	거주국 (국가명) :
------------	-------------

성명(명칭) 및 주소 :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국적 (국가명) :	거주국 (국가명) :
------------	-------------

추가 출원인은 계속 용지에 적혀 있다.

용지 번호

국제출원번호

제2기재란의 계속 용지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본 용지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성명(명칭) 및 주소 :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국적 (국가명) :

거주국 (국가명) :

성명(명칭) 및 주소 :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국적 (국가명) :

거주국 (국가명) :

성명(명칭) 및 주소 :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국적 (국가명) :

거주국 (국가명) :

성명(명칭) 및 주소 :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국적 (국가명) :

거주국 (국가명) :

추가 출원인은 계속 용지에 적혀 있다.

용지 번호

국제출원번호

제3기재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

아래에 적은 자는 대리인 대표자로서

- 이미 선임된 자로서, 국제예비심사에 대해서도 출원인을 대리하는 자이다.
- 이번에 새로 선임된 자로서, 전에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해임되었다.
- 이미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더하여, 특별히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한 절차를 위해 새로 선임된 자이다.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리인코드

이메일 송부 동의: 아래 난 중 하나에 표시함으로써 국제사무국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이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발행한 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송부하고자 할 경우 이 난에 적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 서면 통지서에 앞서 선람용 사본 송부; 또는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서면 통지서는 송부되지 아니한다)

이메일 주소:

- 통신용 주소:** 이 체크박스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신 위의 기재공간에 특별히 통지서 송달을 위한 별도의 주소를 적는 경우에 표시한다.

제4기재란 국제예비심사의 기초

보정에 관한 설명 :*

1. 출원인은 다음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국제예비심사가 개시될 것을 희망한다.
 - 출원시 국제출원을 기초로 할 것.
 - 명세서에 관해서 출원시 명세서를 기초로 할 것.
 - 조약 제34조에 의한 보정을 기초로 할 것.
 - 청구범위에 관해서 출원시 청구범위를 기초로 할 것.
 - 조약 제19조에 의한 보정을 기초로 할 것.
 - 조약 제34조에 의한 보정을 기초로 할 것.
 - 도면에 관해서 출원시 도면을 기초로 할 것.
 - 조약 제34조에 의한 보정을 기초로 할 것.
2. 출원인은 조약 제19조에 의한 청구범위 보정을 무시하고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국제예비심사가 개시되기를 희망한다.
3.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규칙 69.1(b)에 따라서 국제조사와 동시에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하려고 하는 경우, 출원인은 규칙 69.1(d)에 의한 해당 적용기간의 만료시까지 국제예비심사의 개시를 연기할 것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신청한다.
4. 출원인은 규칙 54의2.1(a)에 의한 해당 적용기간의 만료 전에 국제예비심사가 개시될 것을 명시적으로 희망한다.

* 체크박스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시의 국제출원을 기초로 개시되며,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을 개시하기 전에 조약 제19조에 의한 청구범위의 보정서 및/또는 조약 제34조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서가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보정 후의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국제예비심사가 진행된다.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언어는 _____ 이며, 이는

- 국제출원의 출원언어이다.
- 국제조사를 위해 제출된 번역문의 언어이다.
- 국제출원 공개언어이다.
- 국제예비심사를 위해 제출된 번역문의 언어이다.

제5기재란 국가의 선택

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제출로 특허협력조약 제2장에 기속되는 모든 지정국이 선택국으로 선택된다.

용지 번호

국제출원번호

제6기재란 체크 리스트

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국제예비심사를 위해서 제4기재란에 표시된 언어로 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 1. 국제출원의 번역문 : 매
- 2. 특허협력조약 제34조에 의한 보정서 : 매
- 3. 특허협력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서를 첨부한 서한(규칙 66.8) : 매
- 4.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른 보정서(또는 요청된 경우, 번역문)의 사본 : 매
- 5.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른 보정서를 첨부한 서한의 사본(규칙 46.5(b) 및 53.9) : 매
- 6.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른 설명서(또는 요청된 경우, 번역문)의 사본(규칙 62.1(ii)) : 매
- 7. 기타 (서류명을 구체적으로 적음) : 매

국제예비심사기관 전용

접수	미접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또한 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 1. 수수료 계산 용지
- 2. 개별위임장 원본
- 3. 포괄위임장 원본
- 4. 포괄위임장 사본
- 5. 서명 누락에 관한 소명서
- 6. 전자적 형태의 서열목록
- 7.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_____

제7기재란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서명자의 성명(명칭)을 적고 그 옆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청구서를 통해 서명자의 자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도 표시).

국제예비심사기관 전용

1.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실제 접수일 :

2. 규칙 60.1(b)에 의한 흠결보정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정정 후 접수일 :

- 3.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우선일부 19개월의 기간 만료 후 접수되었으며, 아래 4, 5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출원인에게 통지하였음
- 4.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규칙 80.5에 따라 연장된 우선일부 19개월의 기간 내 접수되었다.
- 5.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우선일부 19개월의 기간 만료 후 접수되었으나, 규칙 82에 따라 도달 지연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 6.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규칙 54의2.1(a)의 기간 만료 후 접수되었으며, 아래 7, 8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 7.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규칙 80.5에 따라 연장된 규칙 54의2.1(a) 규정의 기간 내 접수되었다.
- 8.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규칙 54의2.1(a)의 기간 만료 후 접수되었으나, 규칙 82에 따라 도달 지연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국제사무국 전용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송부된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국제사무국 접수일:

PCT

수수료 계산 용지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부속문서

국제예비심사기관 전용

국제출원번호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일부인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출원인		
<p>소정의 수수료 계산</p> <p>1.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input type="text"/> P</p> <p>2. 취급료 <input type="text"/> H</p> <p>3. 소정의 수수료 P와 H에 기입된 금액을 더하여 총 금액을 기입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730 1317 1040 1415"> <tr> <td>총금액</td> </tr> </table>		총금액
총금액		
<p>납부방법 등</p> <p>1.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5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납부서」(별지 제4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 납부서 제출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위 총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p> <p>2. 수수료의 납부일이 공휴일(토요일·휴무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 후의 첫 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p> <p>3. 우편으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환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에 따라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p>		